## 88. 식기류 세척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성별남나이21세직종양식기제조업업무관련성높음1. 개요: 근로자 도○○은 2006년 4월부터 1개월간 TCE를 이용하여 식기류 세척작업을 하던 중 전신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2006년 6월 I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진단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도○○는 가공이 끝난 숟가락을 세척하는 공정에서 일을 하였다. 세척작업은 99% TCE을 사용하는 세척조에 숟가락 등을 넣고 초벌세척을 하고, 이를 다시 새벌세척 부분으로 옮겨 세척을 하고, 이를 다시 세척조 내의 건조로에 옮겨 건조과정을 거친다. 세척작업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였으며, 작업시 손바닥쪽에 빨간색 고무를 바른 목장갑을 이용하였고,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2003년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TCE 82.129ppm으로 노출기준 50 ppm을 초과하였고, 2006년 6월에는 18.503ppm 으로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2006년 7월에 세척공정에서 TCE에 대한 근로자 개인시료와 지역시료를 채취하여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TCE(노동부 고시, TWA 50 ppm, STEL 200 ppm)에 대한 세척공정에서 노출농도는 개인시료 222.5 ppm(38분 측정)이며, 단시간 노출농도(STEL)는 지역시료 345.4ppm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 3. 의학적 소견: 도〇〇은 다른 직업력이 없었으며, 과거력상 약물 알레르기 등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다. 입사 후 1개월부터 손과 팔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붉은 반점이 전신에 퍼졌다. Y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I대학병원에 전원 되어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이로 인한 독성간염으로 진단되었고, 1개월 간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 4. 결론: 근로자 도〇〇은
- ① TCE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하던 중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하였는데,
- ② TCE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 ③ TCE 노출에 의해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임상경과에 부합하고,
- ④ 감염, 약물 등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 이 근로자의 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